

# 한화갤러리아 이사회 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 1 조 (목 적)

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 (적용 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 3 조 (권 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## 제 2 장 구 성

### 제 4 조 (구 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(독립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### 제 5 조 (의 장)

-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- ②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인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 3 장 회 의

### 제 6 조 (종 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한다.
- ③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### 제 7 조 (소집권자)

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,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 8 조 (소집 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7일 전에 우편, 모사전송(FAX), 이메일,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③ 각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의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의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 제 9 조 (부의 절차)

- ① 이사회 의안과 그 제안 이유는 각 이사 또는 업무집행임원이 작성하여 1주일전까지 이사회 간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간사는 전항의 의안을 접수하면 법적 사항 및 문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를 이사회에 부의한다.

## 제 10 조 (결의 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 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상기 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 제 11 조 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- (1)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   - 1) 주주총회의 소집
    - 2)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
    - 3)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(이하 “전자주주총회”라 한다)의 개최 여부 및 전자주주총회 개최시 그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
    - 4) 재무제표의 승인
    - 5) 영업보고서의 승인
    - 6) 정관의 변경
    - 7) 자본의 감소
    - 8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    - 9)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의 양수

- 10)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11) 이사,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12)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- 13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
- 14) 주식배당 결정
- 15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16) 이사의 보수
- 17)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 보고
- 18) 법정준비금의 감액
- 19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(2) 경영에관한사항

- 1) 이사회 의장 선임 및 해임
- 2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3) 공동대표의 결정
- 4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5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6)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. 단,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
- 7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8)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, 준법통제기준의 제·개정 및 폐지 등
- 9) 지점·공장·사무소·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- 10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- 11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- 12) 연간경영계획, 장기사업계획, 회사의 기본정책
- 13) 준법 및 반부패 경영정책의 결정

(3) 재무에 관한 사항

- 1) 신주의 발행
- 2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- 3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4)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5) 연결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, 시설 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
- 6) 연결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타법인에 대한 대여(금전 또는 유가증권)
- 7) 연결 자기자본의 1,000분의 25 이상의 타 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
- 8) 연결 자기자본의 1,000분의 25 이상의 타인을 위한 신규 보증 또는 담보 제공
- 9) 자기주식의 취득, 처분 및 신탁계약 등의 체결 해지

- 10) 자기주식의 소각
- 11) 연결 자기자본의 1,000분의 25 이상의 자산(시설, 출자 제외)의 취득 및 처분
- 12) 연결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의 신규 차입
- 13) 10억 이상의 기부금 집행
- 14)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작성 및 승인

(4) 이사에 관한 사항

- 1)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
- 2)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- 3) 타 회사의 임원 겸임

(5) 기타

- 1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- 2)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
- 3)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선임
- 4) 기타 법령, 공시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

- (1)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- (2)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
- (3)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
- (4)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결과
- (5)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
- (6) 준법 및 반부패 경영시스템 운영현황
- (7)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## 제 12 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 - (1) 주주총회의 승인사항의 제안
  - (2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 - (3) 위원회 설치,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 - (4)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회 별 상세 구성은 각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. 다만,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-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### 제 13 조 (위 임)

- ①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-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소관업무 담당이사에게 해당사항의 집행을 대행 시킬 수 있다.

### 제 14 조 (관계인의 출석)

-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 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 또는 (독립)이사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금융, 회계, 법률, 기타 분야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
### 제 15 조 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### 제 16 조 (의사록)

-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### 제 17 조 (문서의 보존)

이사회 부의안건과 의사록은 간사가 보존한다.

### 제 18 조 (간사)

- ① 이사회는 1인의 간사와 1인의 보조간사를 두며, 의장이 지명한다.
- ② 간사와 보조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.

## 부 칙 (2023.03.02)

1. 이 규정은 회사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 (2026.03.26)

1. 이 규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2. (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) 제 4 조, 제 14 조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3. (전자주주총회에 관한 경과조치) 제 11 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